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2. 29.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1월 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11월 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7년 12월 22일 제53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허숙조)

- 가. 제안이유
 -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보건소법 제2조가 지역보건법 제7조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 보건소법 제4조가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 소장의 임용자격, 소장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
 -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조례에 따르도록 규정
 - 보건소내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의료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를 개정된 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 제1조의 내용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 제2조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하고, 셋째, 조례 제3조 소장을 임명할 때 전에는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면허취득자가 없을 경우 부득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 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 넷째, 제4조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른 다와 제5조 영등포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구청장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43 |
|----------|-----|

제출년월일 : 1997. 11.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소법 및 보건소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95. 12. 29)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96. 7. 13)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97. 2. 14)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 보건소법 제2조가 지역보건법 제7조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나. 업무(안 제2조)

- 보건소법 제4조가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다. 소장(안 제3조)

- 안 제1항의 소장의 임용자격 및 안 제2항의 소장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라. 공무원 정원(안 제4조)

-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르도록 규정

마. 하부조직(안 제5조)

- 보건소내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2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합의사항 : 구청 총무국장 협의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조례(안) : 별첨참조

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2조 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중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

| 현행 | 개정 |
|---|---|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2조</u>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u>지역보건법 제7조</u> |
| 제2조 [업무] 보건소는 <u>보건소법 제4조</u> 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 제2조 [업무] <u>지역보건법 제9조</u> |
| 제3조 [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 [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제4조 [공무원 정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다. |
| 제5조 [하부조직] 보건소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 [하부조직], 규칙으로 정한다. |
| 제6조 (생략) | 제6조 (현행과 같음) |
| 제7조 (생략) | 제7조 (현행과 같음) |